



2017년 △△면 종합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17. 3. 22.(수)~3. 24.(금) / 3일간
- 대상기간 : 2015. 3. 1. ~ 2017. 2. 28. / 2년간
- 지적사항 : 16건
 - 행정상 조치 : 시정 4건, 주의 12건
 - 재정상 조치 : 15천 원(부과 15)



2017년 △△면 종합감사 결과

I 총 평

1. 일반행정 분야

-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난(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의 발생빈도와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로, 평상시 철저한 사전대비와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 빈번한 추세에 대비할 수 있는 민방위 시설물 및 각종장비 등을 사전에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정비하여 재해·재난등 긴급한 비상사태 발생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

2. 외계분야

- 각종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회계업무 담당자가 업무연찬이 미흡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가급적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신용으로 사용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의 식비등을 지출할 때에는 급식단가 7,000원을 초과 지출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노력함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광주시와 인근 시·군등 외지에서 일부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우리군 관내업체에서 구입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함.

3. 건설분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 하자검사는 연 2회 이상, 최종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에 실시하고 즉시 계약대상자에게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함에도, '16년부터는 '17일 현재까지 총 18건에 대해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담당자의 업무연찬이 필요함.

4. 사외복지 분야

- 묘지를 개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비서류등을 미비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대여하여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함.

5. 농업분야

- 농지전용신고 수리 등 경작농지에 변동이 생긴 경우 해당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주의 농지원부를 정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으며, 시설원예분야 보강 등 시설사업은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 하며, 봄철 산불 방지기간으로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유 진화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대비를 하여야 함에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

II 감사 결과

1. 지적 건 수 : 16건

- 행정상 조치 : 시정 4건, 주의 12건
- 재정상 조치 : 15천 원(기타 15)

2. 지적사항 목록

(단위 : 건, 천 원)

연번	분 야	건 명	행정상 조치 (건)		재정상 조치 (천원)			기타
			시정	주의	계	회수	부과	
계		16건	4	12	15			15
1	일반행정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소홀		○				
2	회계분야	업무추진비 지출 소홀		○				
3	“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				
4	“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미 이행	○					15
5	“	세출예산의 지출결의서 적용 부적정		○				
6		세출예산 집행과목 적용 부적정		○				
7	“	관외출장 여비지급 증빙자료 미 첨부		○				
8	“	공공운영비 집행과목 적용 소홀		○				
9	“	현금영수증 처리 부적정		○				
10	건설분야	공사 하자검사 소홀	○					
11	“	공사계약체결 업무처리 소홀		○				
12	사회복지	개장신고 신청서 구비서류 장구 부적정		○				
13	“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안내 홍보 소홀		○				
14	농업분야	농지전용(개발행위)에 따른 농지원부 정비 소홀	○					
15	“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16	“	산불진화 보유장비 점검정비 소홀		○				

Ⅲ 지적사항 요약

1.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소홀

-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운영 지침에 의하면 효율적이 시설·장비 관리를 위해 반드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발생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 하여야 함에도 보유중인 시설·장비의 보관 및 관리를 소홀히 함.

2. 업무추진비 운영관리 소홀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3.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 입금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56명에게 급식단가 7,000원을 초과하여 집행 하는 등 담당자의 업무연찬이 필요함.

4.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미 이행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르면, 1,000천 원 이상 물품 구입계약시 계약금액의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되, 산출결과 1건 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 매입 하여야 함에도 '16년 6월 '강진 미프로젝트 아름다운 군동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개발공채 15,000원을 매입하지 않음

5. 세출예산의 지출결의서 적용 부적정

- 업무담당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일반지출결의서와 구입과지출결의서를 제대로 적용하여 지출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회계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6. 세출예산 집행과목 적용 부적정

- '15년 7월부터 '17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민원인의 접대명목'으로 차 및 음료 등을 구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처리하였음.

7. 관외출장 여비지급 적용 부적정

- 「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에 따르면 2일 이상 관외출장시에는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15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8건에 대해 증빙자료 없이 지출한 사실이 있음.

8. 공공운영비 집행과목 적용 소홀

- '15년 3월부터 '16년 1월까지 7건에 대해 '호남방송 TV시청료 납입'건을 공공운영비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사무관리비로 지출하였다. 특히, 일반운영비(수용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써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산의 집행과목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출함에 따라 담당자의 업무연찬이 필요함.

9. 현금영수증 처리 부적정

- '15년 4월부터 '16년 1월까지 7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연간계획등을 수립하지 않고 법인카드결재를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승인으로 결재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지출한 사실이 있음.

10. 공사 하자검사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검사는 연 2회 이상, 최종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에 실시하고 즉시 계약대상자에게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16년부터는 '17일 현재까지 총 18건에 대해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1. 공사계약체결 업무처리 소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 1항에 의하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수의계약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공사량의 증·감 발생 시 위의 서류를 근거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12. 개장신고 신청서 구비서류 징구 부적정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의 의하면 묘지를 개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비서류등을 미비하게 처리하였으며,

13.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역안내 홍보 소홀

-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대역하여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처리하였음.

14. 농지전용(개발행위)에 따른 농지원부 정비 소홀

-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비하고, 농가주 등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지 전용신고 수리 등 경작농지에 변동이 생긴 경우 해당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주의 농지원부를 정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15.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또한, '15년부터 '16년까지 지원된 시설원예분야 보광등 시설 사업 등 6건에 대해 사후관리대장 미 작성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였음.

16. 산불진화 보유장비 점검정비 소홀

- 봄철 산불 방지기간으로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유 진화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대비를 하여야 함에도 업무를 소홀히 함.